2022년도 제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2. 5. 9.(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이성엽, 송수현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7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03건(안건번호 제2022-32623호~3362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32623호~32627호(순번 1번~5번)은 ♧♧♧ 블로그 또는 카페에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안건번호 제2022-32627호(순번 5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그 외에 안건번호 제2022-32628호~33625호(순번 6번~1003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64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7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 관련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내용은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는 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1호 안건 회의록은 비식별 처리 후 원안대로 공개하고, 제2호 안건 회의록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제2022-81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등 38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646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모두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5번은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 또는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 총 5건임.

  순번 1번은 ♧♧♧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본 방송물 '★★★

★★ ★★ ★★★★ ★★'임. 심의일 현재 게시물에 접속해 보면 비공개 글이라는 안내가 표시됨. 다만 보호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24분 18초의 저작물 한 화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순번 5번은 ♧♧♧ 카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본 방송물 '☆☆☆☆☆☆ ☆☆☆'로, 심의일 현재는 삭제되었거나 없는 게시물로 표시됨. 역시 보호원 조사 자료에 의하면 24분의 저작물 한 화 전체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순번 1번 내지 4번의 경우 비공개 게시물로 표시되고 있는 게시물임. ♧♧♧ 블로그는 이용자 간 이웃·서로이웃을 맺어 해당 범위의 이용자에 한하여 게시물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 또는 이웃 관계가 아닌 이용자에게는 일괄적으로 '비공개 게시물'로 표시됨. 즉 불법복제물이 이웃공개·서로이웃공개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거나, 차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공중의 감상에 제공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에 대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전체공개 상태의 게시물과 동일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

순번 5번의 경우에는 현재 게시물이 삭제되어서 삭제·전송 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의견임. 다만 게시물이 삭제된 순번 5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1번부터 5번까지 ♧♧♧ 블로그 또는 카페에 게시된 방송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구함.

- A 위원: 순번 1번부터 순번 4번까지는 게시자 본인이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고 언제든지 다시 공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권고하겠다는 의견인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결의견임.

- B 위원: 순번 5번은 삭제되었는지?

- A 위원: 그러함. 순번 5번은 삭제되어서 심의 기준에 따라 경고의 시정권고로 가결하는 게 맞는데, 순번 1번부터 순번 4번은 삭제되거나 전송 중단된 게 아니라 비공개로 설정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권고 가결하겠다는 의견임.

- B, C, D 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4번에 대해서 시정권고 가결하고 순번 5번은 경고의 시정권고로 가결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다음은 순번 6번부터 순번 1003번까지 총 1,641건의 모니터링 안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

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SW,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더 배드맨'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76번은 얼마전에 개봉한 영화 '더 배트맨'임. 2시간 56분의 영화 전체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국내 VOD서비스에서 10,000원에 이용할 수 있음.

(드라마 '파친코'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037번은 애플TV 플러스에서 독점 제공하고 있는 드라마 '파친코'임. 1,100포인트에 1화부터 7화를 모두 판매하고 있음.

(게임 '크루세이더 킹즈 3'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25번은 웹하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게임 '크루세이더 킹즈 3'임.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이고 스팀 등에서 51,000원에 판매중임. 웹하드에서는 290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만화 '골든 카무이'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35번은 일본 만화 '골든 카무이'를 웹하드에서 170캐시에 판매중인 사안임. 170캐시에 1화부터 314화를 판매하고 있고, 불법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4건을 포함하여 순번 6번부터 순번 1003번까지 총 1,641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SW,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SW, 게임, 출판, 만화 등

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번~100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32623호~32626호(순번 1번~4번)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로 가결, 안건번호 제2022-32627호(순번 5번)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로 가결하고, 그 외 안건번호 제2022-32628호~33625호(순번 6번~100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5. 16.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